## 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 IT·핀테크전략국 담당자 변남주 연락처 02-3145-7424
요청대상 행위	□ 긴급 장애 처리를 위해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정도 처리시스템 개발·보안·운영용 VDI단말기로 원격 접속을 하는 것이「전지 금융감독규정」물리적 망분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
판단	□ 요청대상 행위는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
판단이유	<ul> <li>□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운영, 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.(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 제15조제1항제5호)</li> <li>○ 다만, 장애 등 긴급한 상황 시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 접속은 망분리 예외적용이 가능합니다. (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제2항제3호)</li> <li>□ 요청대상 행위는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로 망분리 적용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</li> <li>○ 망분리 적용 예외 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,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적용(시행세칙 [별표7]에 따른 단말기 보안강화, 원격접속 통제 수립 등)정보보호 위원회 승인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

- ※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